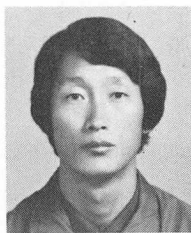


축산물 시장 개방과 양돈 산업의 현안 문제



성 정 표
(본회 울산·울주지부장)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가로 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 생산업의 산업적 위치가 크게 향상되어 왔음은 그동안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축산업 관련단체 및 정부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국내부존 자원의 빈약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의 계획은 결국 공업을 그 주체로 결정하고 말았다. 국내 부존 자원이 빈약한 나라의 공업화란, 결국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그 생산품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품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지난 몇 년 사이 무역흑자가 늘어나면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생산기반이 취약한 양축농민의 생존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제경제의 추세는 자국의 취약한 분야의 산업을 끝내 보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양축하는 우리 농민이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화시대하에서 양축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생산자 스스로가 기술혁신으로 생산품에 대한 질을 높이고 꾸준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축산업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지원정책이 선진농업국 또는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최근 우리의 양돈산업이 안고 있는 축산업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정부시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돈업 등록·허가 제도에 관한 문제점

○84. 8. 2 법률 제 3738호로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양돈업의 등록허가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감축명령·감독 등 법을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산업의 특성 및 양돈농민의 입장을 고려치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법시행 3년이 경과되었지만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 양돈업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2. 양돈업 허가 상한선을 모돈 1,000두로 하고 있으나, 현행 예외 조항으로, 수출계열화 종돈 등을 허가두수 초과시에도 사육가능케함으로써 재벌양돈의 사육두수는 별 규제없이 사육두수의 증식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업규모와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법을 시행하는 정부도 전업양돈규모 이하의 생산자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모든 예외 조항을 철폐하고 허가상한선인 모돈 1,000두를 초과 사육하는 기업농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축산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

1. 관세

현행 농축산 원자재의 수입관세가 경쟁 상대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양축농민의 부담경감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2. 축산물 생산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
축산업 관련 세제는 생산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므로 양축농민의 부담경감과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을 위해 인하되어야 한다.
”

사료, 농축산기계, 동물약품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축산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시키지 못하고 양축농민이 부담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제도의 불합리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조치하여 양축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축산업 소득세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 국제무역에서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양축농민에게 축산업 소득세가 축종별 소득 표준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되고 있으므로 농가경제 및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위해 차제에 축산업 소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4. 축산물 도축세

선진국에서는 축산물을 식량공급의 차원과 위생적인 면으로 고려하여 도축세 면제와 도축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소·돼지의 도축세는 도살 소재지의 시·군에서 부과하며 세율은 기준시가의 1%이고 납세의무자는 도축세 이외의 작업장 수수료, 판매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축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축산물 생산지원 정책

1. 금융 지원 확대 및 장기저리 융자 실시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이 경쟁 상대국 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인바, 잉여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대외 무역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축산물의 수출국(경쟁국)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조치가 요망된다.

—양축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 수준

—축산 폐수처리 시설자금 : 융자 및 보조지원.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농가에 대해서 70% 장기저리융자 30% 보조지원)

—축사 시설개량자금 융자확대.(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

2. 사료시책의 개선점.

사료원료 수입한도량(쿼타)제도와 곡물사 용비를 제한 시책으로 연간 265억원의 사료도 입 추가 비용이 양축농민에게 전가되고, 국산 옥수수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료원료로 배정함으로써 양축농민이 옥수수 경작농민을 위해 연간 약 13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산옥수수의 배합사료원료 배정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사료원료용 보리 수입개방과 배합사료 공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조치하며 단미 사료 구입으로 자기 배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축산물 생산비중 배합사료가 차지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절감되며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3.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축사부지 대체 농지 조성기금 감면 실시

양축농민의 자가소유농지에 건축한 축사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축사의 부지가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불법 농지 전용실태로 양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므로 양축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의 부지에 대해서도 대체농지 조성기금을 면제하여 축산용지로 전용토록 하는 특별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물 수출지원 정책

1. 축산물 수출보조금(장려금)지원

연간 15억달러(28만톤)의 일본 돈육시장에 돈육을 수출하는 대만, 덴마크 등은 수출돈육 kg당 각각 80원~300원 까지 수출장려금을 지원하여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공산품의 수출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할 경우 수출실적 1달러당 330원~500원까지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그러나 축산물 수출금융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축산물 수출시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수출장려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양돈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축산물 유통개선 지원정책

1. 도축부산물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도축부산물은 지정도매인이 특정인에게 수의 매매하고 있어 도축부산물의 시장가격은 수의 매매 가격의 3~6배 이상으로 상인들의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축부산물의 독과점적 시장형성으로 양축농민들이 당하는 손해가 막대한 만큼 현행 수의 매매 방식에서 경매 또는 공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축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합리화 추진의 필요성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의 생체계근시설 미설치, 계류장 샤워시설부족, 지육수율의 저조 및 비과학적인 경매제도 등 운영관리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양축농민의 불신이 지대함이 사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의 근대화에 집중적인 지원개선 정책의 실시가 절실하다.

3. 축산물의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판매제 실시

축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통도체 지육은 매 참인·중매인들의 묵축에 의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 경매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전체정육에 대해 단일 가격으로 고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2분도체로 상장되어 도체중,지방, 육질 등의 과학적인 측정으로 등급을 사정하여 거래하는 “도체등급제도”와 소매단계의 “부위별 차등가격제도”의 실시로 고품질의 규격화된 축산물 생산과 표준화된 상품의 거래로 유통효율을 증진시키는 조치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

축협 돼지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가격등락이 심한 양돈산업의 안정과 부업 양돈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91년까지 30개 계열조합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이미 85~87년에 9개 계열조합을 선정하여 계열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부터 연간 63,000두의 비육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당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양축농민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 지금도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위치에서 양축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열화사업은 명백히 그 구성원들과 경합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현행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에서 F1 번식돈을 생산하여 계열조합에 분양하고, 계열 조합에서는 3원교잡돈을 생산하여 농가에 입식시키며 농가에서는 비육기능만 담당하는 현행 축협돼지 계열화 사업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열 조합에서는 양축농민에게 돼지 사육기능을 맡겨서 산업의 전문화 및 분업화를 유도하고 축협은 이들에게 자금지원 기술지도 및 판로개척을 해주어 명실공히 양축가 조합원을 지원육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축산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의 실시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농축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사양 산업화 되므로 급변하는 주변 여건하에서 양축농민의 생존을 위한 자구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어느 한사람 또는 그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를 연구개발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의 사업을 축종별 생산자협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토록하는 축산부문의 자조금제도의 법제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결정적인 제도가 될지도 모를 자조금제도의 법제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상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농장외적인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보완되는 날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희망을 가지고 생업으로 선택하여 평생을 종사하기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